

1. 등록 및 수강

등록

●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공통

학생들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함으로써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제일 먼저 등록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한데, 보통 1학기 등록은 2월말 경, 2학기 등록은 8월말 경에 실시한다.

절 차

1) 신입생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다만, 대학원 신입생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2) 재학생

인터넷으로 발급한 등록금 납부고지서와 함께 등록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유의사항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등록이나 휴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되며, 복적생, 재입학생, 전 학기 휴학생은 등록 전에 복적, 재입학, 복학(귀)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해야 한다.

학 점 취 득

●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공통

학점은 교과이수의 단위로서 1학기간 15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체육)는 1학기 30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학기당 취득학점

1) 학사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17학점 이내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학생의 직전 두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일 때 추가로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2) 대학원과정(석·박사)의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학점의 취득기준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에 있어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일 때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한 학기동안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정하여 신청하는 절차이다.

신청기간

- 1학년 신입생 : 2월 중
- 재학생 : 교무처에서 지정한 시기
 - 1학기(당해년도 2월 초)
 - 2학기(당해년도 8월 초)

장 소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웹으로 신청)

절 차

수강편람 및 공고문 숙지 → 지도교수 및 학과장에게 수강지도를 받음 →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입력

- 웹사이트 주소 : <http://sugang.snu.ac.kr>

변 경

- 기간: 학기개시 1주일 이내

정보화포털(본인ID로 로그인) → 학사행정 → 수업관리 → 수강정보)에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기간 중 대학(학과), 컴퓨터실습실 또는 중앙전산원 컴퓨터 실습실에 설치된 시스템에 학생이 직접 변경(취소·추가신청) 입력한다.

■ 학 인

변경기간 후 수업주수 4분의 1선까지 정보화포털에 접속,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최종 확인, 확정한다.

■ 수강신청취소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수업주수 2분의 1선까지는 교과목 수에 제한없이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교과목은 성적란에 “W”로 표기한다.

다만, 2분의 1선 이후에도 질병 및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기말시험을 치르지 않은 교과목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증명이 필요함(예=진단서 등).

전 공 · 복수전공 · 연합전공 및 부전공

● 학사과정

■ 전 공

학생이 선택한 전공분야의 체계적인 학습을 위하여 각 학과에서는 교과과정을 작성하여 전공분야 연구에 필요한 교과목을 설치하고 있다. 전공과목의 이수능 필수과목으로 분류된 전 교과목을 포함하고 스스로가 선택한 교과목(전공선택)을 합하여 39학점 이상으로 하되 대학별로 따로 정하고 있다. 필수과목으로 분류된 교과목 이외의 전공과목을 선택할 때 스스로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혹은 전공연구의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위하여 각 학과 교수나 선배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복수전공

복수전공이란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식의 편협함을 지양하여 넓은 학문적 시야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소속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적용범위

학부 · 학과(학과(부)내 전공과정 포함)를 원칙으로 함.

- 지원자격

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2분의 1 이상 취득한 이후

• 신청절차 및 이수방법

당해 학기 개시 2주 전에 복수전공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단과대학 내 복수전공인 경우에는 학장에게, 단과대학간 복수전공인 경우에는 학장을 경유하여 복수전공을 이수코자 하는 대학에 제출한다.

복수전공이수자는 해당 학과(부)에서 정한 전공과목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복수전공시 복수전공 학과(부)의 교과과정에서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단과대학 내의 공통교과목 포함)에는 9학점까지, 소속 전공학과(부)와 복수전공 학과(부)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단과대학 내의 공통교과목 포함)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 연합전공

2개 이상의 학과(부) 전공이 연합하여 교과과정을 편성, 제공하거나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 지원자격

- 4개 학기 이상 이수인 경우인 자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으로 2.7 이상
- 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2분의 1 이상 취득한 이후
- 연합전공 참여학과 재학생
-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이수방법

연합전공 해당 학부(과)에서 정한 전공학점을 최소 39학점 이상 이수(단, 소속 전공 학과(부)에서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 제공한 공통교과목은 9학점까지, 소속 전공학과(부)와 연합전공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은 3학점까지 이중으로 인정)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신청 및 취소절차

당해학기 개시 2주 전까지 지도교수, 학과장, 해당 대학을 경유하여 연합전공 주임에게 신청서 제출, 취소원은 매학기 개시 2주 전에 연합전공 주임에게 제출

■ 부 전 공

부전공이란 오늘날 학문이 점차 상호 교류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자기 전공 이외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학구 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학과 전공과목을 일정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 전공하는 분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다양성 있게

학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전공을 이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허용학과의 범위

- 인문·사회계 학과(부)는 인문·사회계 각 학과(부)와 자연과학대학의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및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자연계 학과(부)는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계 대학 전 학과(부)
- 예능계 학과는 소속대학의 각 학과(부)
- 의예·수의예·의학·치의학·수의학·간호학과는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으며, 타 학과(부) 학생도 위 학과를 부전공 할 수 없음.
-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부전공 이수 : 사범대학 각 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교육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상호간에 가능하며, 이외의 학과(부) 학생들은 위 학과의 부전공을 이수할 수는 있으나 교원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다. 단, 교원자격증의 부전공 표기를 원하는 경우는 부전공 학과의 교과교육론 및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을 포함한다.

• 지원자격

33학점 이상 취득자

• 이수방법

부전공 이수자의 부전공 이수학점은 부전공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포함한 24학점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 34학점(전공 30학점과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4학점), 법과대학 40학점} 이상이며,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절차 및 수강신청

매학기초 당해 학기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부전공 지원서와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대학에 제출한다.

※ 부전공 학생은 부전공 학과(부)장의 부전공 과목 및 이수 절차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하고,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취소원을 제출

과 정 별 졸업소요학점

● 학사과정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구분별 학점은 교양과목 36학점 이상으로서 단과대학 별로 정해져 있으며, 전공과목 39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전공 선택자는 부전공 학과에서 지정

한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교직과정 선택자는 별도로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사범계학과 학생으로서 교원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부전공교과목 34학점(전공 30학점, 교과교육영역 2과목 4학점) 이상(96학번부터)과 부전공 학과의 필수과목을 취득하여야 하나 유의사항은 사범대학내 학과간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의 학과간에만 발급되므로 부전공 신청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위의 교과구분별 최저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교양과목, 전공과목(복수·연합·부전공과목 포함), 교직과목의 학점수가 당해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총학점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의예과, 수의예과의 수료학점은 교양과목과 별도로 지정된 과목학점을 포함하여 68학점 이상으로 한다.

● 석·박사과정

대학원 각 과정의 학위취득 최저 소요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위취득 최저 소요학점

과 정 별		교 과 학 점
석 사	I. 아래 II~ VIII를 제외한 전대학	24
	II. 경영대학	'9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30 '9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39
	III. 미술대학	'9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4 '9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30
	IV. 보건대학원, 환경대학원	30 ¹⁾
	V. 행정대학원	36
	VI. 국제대학원	45
	VII. 치의학대학원	165
	VIII. 경영전문대학원	45
박 사	국제대학원을 제외한 전학과 국제대학원	60 ²⁾ 45

1) 단, 보건대학원 석사2부는 제외

2) 석사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함.

교양과목 이수

● 학사과정

2002년도부터 시행되는 개편 교양과정은 기존의 8개의 학문관심영역(이하 “영역”이라 함)별로 분류하였던 것을 3개 층위(학문의 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로 재분류하였다.

“학문의 기초”는 국어, 영어, 수학, 제2외국어 등 기본 교양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대학국어와 대학영어는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기타 기초과목은 각 대학 특성에 따라 필수과목을 지정 이수하게 하고 있다.

“핵심교양”은 4개 영역(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와 이념, 자연의 이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25~35개 내외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3개 영역 이상에서 9학점 이상을 모든 대학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인문, 사회계열은 자연의 이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자연, 이공계는 자연의 이해 영역 밖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일반교양”은 기존 교양과목 중에서 학문의 기초로 분류되지 않은 과목과 핵심교양 과목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교양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개학기 이상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나 개설 후 2개학기 연속 수강인원이 미달되어 폐강되는 경우에는 교과목을 폐지한다.

계절학기 수업

■ 계절학기 수업의 성격

계절학기 수업이라 함은 학칙상의 정규학기와는 구분된다. 계절학기 수업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까지 이며, 취득한 학점은 학칙에 규정된 학사과정 이수학점에 포함하되, 계절학기는 학칙상의 수업연한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수강신청기간 : 매년 5월 중

1) 수강신청변경 및 취소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일정한 기간내에 원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교과목의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폐강과목에 한해서 교과목 변경 및 수강료 반환이 가능하다.

2) 성적 평점평균의 적용 기준

계절학기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은 당해 학년도의 정규학기 성적 평점평균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며, 졸업학점 계산에는 포함한다.

졸업, 학위수여 및 수료

● 학사과정 (정규졸업)

규정된 수업연한의 재학과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 및 종합시험,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 졸업사정 대상 및 기준

- 1) 등록회수 8회~16회까지의 학생으로 졸업 당해 학기에 재학 중이며 수업주수 4분의 1 이 내에 졸업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 2) 총 취득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되, 교양과목은 각 대학별로 정하여져 있으며, 정해진 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3) 주·부·복수·연합전공이수자는 각각의 전공과목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학생
- 4) 교양 및 전공과목 중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
- 5) 졸업논문(종합시험 또는 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 포함)에 합격한 학생

■ 절 차

대상자 선정 → 졸업사정 → 대학교수회의 심의 → 졸업생 확정 → 졸업대장 작성 → 졸업증서 작성 → 학적부 및 등록대장 정리

* 졸업사정시, 전공 또는 교양과목 이수학점 부족 등으로 졸업에 탈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학기 수강신청시 이미 취득한 학점을 재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 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박사통합) 과정

다음과 같은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사이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되면 학위가 수여된다.

■ 수업연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2년(등록 4회)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 4년 이상, 치의학대학원 석사

과정 4년 이상,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6년 이상, 다만 석사·박사 통합과정 및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

■ 재학연한

석사과정은 4년 이하, 박사과정은 6년 이하, 석·박사 통합과정은 8년 이하,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은 8년 이하,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12년 이하,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3년 이하

■ 취득학점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이상,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은 165학점 이상,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및 국제대학원 박사과정은 45학점 이상, 전공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은 165학점 이상,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논문제출자격시험

전공학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공과목과 외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논문제출자격이 주어진다.

● 예과 수료

자연과학대학 의예과, 수의예과에서 재학 중인 학생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수료하게 된다.

■ 대 상

의예과, 수의예과에 재학하여 4~8회 등록한 학생

■ 수료 사정기준

소정의 이수 학점을 취득한 학생으로서 평점평균 2.0 이상인 학생

■ 절 차

수료 예정자 명부작성 → 예과 과정 수료사정 심의 → 수료자 명부 작성 → 총장에게 승인 요청 → 수료자 확정 통보

의예과, 수의예과를 수료한 학생은 의과대학 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로 각각 진입한다.

2. 전과(부), 휴학 및 기타

전 과 (부)

본교 내에서 학생의 학과(부) 소속을 변경하여 다른 학과(부)에 소속함을 말한다.

허가조건

전과(부)는 매 학년도 말에 한하여 4회 이상 등록하고 제2학년 수료학점(66학점) 이상, 제3학년 수료 학점(98학점)에 미달되는 자로 한다. 전·출입 인원은 학과(부)별 입학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허가범위

- 1) 사범계는 사범계 각 학과간
- 2) 사범계 이외의 학과(부)는 사범계 이외의 각 학과(부)간 (다만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 수의학과, 간호학계로의 전과(부)는 제외)

절 차

- 1) 소속대학 이외의 대학 : 전과(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와 소속 대학장의 승인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대학장에게 제출
- 2) 소속대학 내 : 전과(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학과(부)장의 승인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원서를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한다.
- 3) 전과(부)의 지원을 받은 대학은 소정의 전형을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1) 전과(부)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 2) 전과(부) 후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학과(부)의 교과목 이수 원칙을 따른다.
- 3) 전과(부)는 1개 학과(부)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이중지원 불가)

제 한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자는 전과(부)를 할 수 없음

편입학 및 위탁생

학사편입학

학사과정의 학사편입학은 3학년 (의과대학, 수의과대학은 본과 1학년)에 한하여 학력을 평가한 후,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3학년 입학 총 정원의 5%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위탁생

정부 각 부처 재직자로서 그 소속 장관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에 한하여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의외로 허가할 수 있으며, 위탁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되 소정의 시험을 거쳐 수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여할 수 있다.

휴학, 퇴학 및 제적

휴학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며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종류

1) 일반휴학

등록기간 중에 한한다(등록금을 내지 않고 하는 휴학).

2) 학기중 휴학

- 등록된 학생으로서 수업일수의 2/4 이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하면 된다(등록 후 수업도중 휴학).
- 당해 학기 수업주수 2/4부터 종강 전까지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종강 후 등록기간 전의 휴학은 군복무·군대체복무 휴학에 한하며 산업기능요원 선발을 위해 휴학하는 경우 지정업체 확인서(병무청의 지정업체 선정 통보 공문 사본), 재직증명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확인서(지정업체 발행)를 첨부하여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해 휴학하는 학생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을 하고 편입

후 1주일 이내에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제출하여 군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절 차

휴학원작성 → 학과장(지도교수) 경유 → 대학 행정실에 제출 → 휴학 허가(학(원)장)

휴학의 제한

- 1) 학사과정-6학기(예과과정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2) 석사과정-4학기(단, 치의학대학원 6학기, 경영전문대학원 8학기)
- 3) 박사과정-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10학기

군입대 휴학

재학 중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대 후 현역복무확인서(입대 년월일이 기재된 것)를 6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의 의무 군복무기간은 일반 휴학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군입대 휴학으로 따로 처리된다.

성적 처리

학기 중 휴학한 학생(군입대 포함)의 성적은 그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등록금

1) 등록 전

등록하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납입금이 면제된다.

2) 등록 후

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퇴 학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기입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

● 제 적 (소정기간의 경과,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제적)

- 1) 휴학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제적된다 (병역복무를 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재학연한이 초과된 경우에는 제적된다 (재입학 불가).
 - 3) 등록기간 중 휴학 허가없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된다.
- ※ 기타 사유로 인한 제적은 해당란 참고

복 학(복귀), 복적 및 재입학

휴학 또는 퇴학한 학생이나 제적된 학생이 다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 분

- 1) 복 학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 (일반 휴학자)
- 2) 복 귀
넓은 의미로 복학에 속하나 등록 후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 (학기 중 휴학자)으로서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 3) 복 적
휴학 허가없이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 (제적 후 1년 이내) :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복적이 가능하다.
- 4) 재입학
퇴학한 학생 또는 제적된 학생 :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시 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

- * 학과의 여석이 생기지 않으면 복적 또는 재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히 이점 유의하여 제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절 차

신청서 작성 → 학과(부)장 (지도교수) → 학(원)장에 제출 (행정실) → 각 대학(원)장은 검토 · 심사 → 허가

제 한

- 1) 복적 및 재입학은 재학기간 중 각각 1회에 한한다.
- 2)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자,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3)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도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다.
- 4) 복적 및 재입학은 학과(부)별 학년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심사한 후 허가한다.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

- 1) 학사과정
4년 내지 6년으로 하되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건축학과 건축학 전공은 5년,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은 수의대는 6년(예과 2년, 전공과정 4년)으로 한다.
- 2) 석·박사과정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2년 이상,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 4년 이상,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 과정은 6년 이상으로 한다.
- 3) 석·박사 통합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각각 6월 이내, 석사·박사 통합 과정 및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재학연한

- 1) 학사과정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과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자는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다만, 유급 규정을 적용하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의 학사과정 학생, 학사과정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 연합전공 이수자, 재외국민 학생 및 외국인 학생은 재학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 2) 석·박사과정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6년, 석·박사 통합과정 8년,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 8년,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12년,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3. 입학전 교육

T EPS 측정시험

TEPS란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의 약자로서 서울대학교가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영어능력 평가시험으로 우리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능력에 따른 수강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입학전 시행하고 있음.

<평가 결과에 따른 수강반 편성 기준>

- 751점 이상 : “고급영어” 수강 가능(선택). “대학영어” 수강을 면제함.
- 551점~750점 : “대학영어” 수강(필수)
- 550점 이하 :
 - 본교 언어교육원 등에서 재학중 학생 본인이 자율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여 551점 이상을 취득한 후 “대학영어”(필수) 수강 가능.
 - “기초영어” 수강자는 TEPS 성적이 없이도 “대학영어” 수강 가능.
 - 서울대 - 제주대 연합 영어캠프(영어심화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등급을 받은 학생은 “대학영어” 수강 가능.

*단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의 경우 TEPS 점수 구분은 500점 이하/501~700점/701점 이상임.

수 학생취도 측정시험

자연과학대학(의·수의예과 제외),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농경제사회학부 제외)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전에 개인별 수학성취도를 측정하여 수준에 따른 수강반을 편성, 보다 체계적인 수학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

평가 결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고급수학 및 연습1”을, 일정수준 미달지는 1학년 1학기에 기초수학, 여름학기에 “수학 및 연습1” 또는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1”, 2학기에 “수학 및 연습2” 또는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2”를 수강하여야 함.

VOD강좌 및 출석강좌(수시모집 합격자 대상)

- VOD강좌
 - 영어(TEPS) : 550점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4주 동안 TEPS 교재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강의 제공(* 단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의 경우 500점 이하)
 - 수학 : 일정수준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 및 Webwork 과제물 등 제공
- 출석강좌
 - TEPS 및 수학 5일 동안 15시간 실시

4. 대학원 학위취득

석 ·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시행근거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7조

응시자격

1) 석사과정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및 전문대학원에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과정간의 취득학점 인정 포함) 이상 취득한 학생. 다만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필요에 따라 각 대학(원)장이 19학점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미 시행된 시험에서 일부 불합격과목이 있는 학생은 그 불합격과목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2) 박사과정

본교 대학원생 박사과정에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석·박사과정 학점통산인정 포함) 이상 취득한 학생. 다만, 석·박사과정 연계운영으로 진입한 박사과정 학생은 박사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통산 3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이미 시행된 시험에서 일부 불합격과목이 있는 학생은 그 불합격 과목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 배점 및 합격기준

1) 시험과목

가) 외국어시험

- 석사과정 : 별표 1 참조
- 박사과정 : 별표 2 참조

* 외국어시험 중 영어과목은 TEPS 및 TOEFL(CBT·IBT) 정기시험성적으로 대체함.
(TEPS 및 TOEFL성적은 본교 입학시 또는 재학시 인정받은 성적과 본교 입학 후 취득한 성적은 최종과정 졸업시까지 인정)

나) 종합시험

- 석사과정 : 전공과목
- 박사과정 : 전공과목

2) 배점 및 합격기준

가) 배점

- 석사과정 : 영어과목은 각 대학(원)에서 정한 등급 이상의 TEPS 및 TOEFL(CBT · IBT) 정기시험 성적으로 하며, 제2외국어 시험은 100점 만점, 전공과목 100점 만점
- 박사과정 : 석사과정과 동일

나) 합격기준

각 과목별로 석사과정 60점, 박사과정 70점 이상[단, 영어과목(TEPS 및 TOEFL)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 면제등급에 따름]

3) 외국어시험 합격 인정

- 가) 1995학년도 이후 대학원 신입생부터 영어 및 제2외국어 과목의 입학고사 성적이 일정 점수(석사 60점, 박사 70점) 이상이면 해당 과목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함.
- 나) 계절수업에서 제공된 제2외국어 대체과목(독어, 불어)을 수강하여 C- 이상 성적을 취득 하면 해당 과목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함.

시험시기

3월과 9월(연 2회 실시)

(별표 1)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과목표

구 분	학 과(부)	외 국 어 시 험 과 목	
		필수	제 2 외 국 어
인 문 사회계	I. 인문대학 소속 각 학과 및 협동과정, 법학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역사)	영어	· 독어, 불어, 중국어, 노어, 서반어, 일어, 한문 중 1과목. 다만, 한문은 국어국문학과외의 국문학전공(2006학년부터는 국어학전공자도 한문선택 가능), 중어중문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철학과외의 동양철학전공, 종교학과, 미학과, 협동과정비교문학전공·기독교철학전공, 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의 역사전공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철학과외의 서양철학전공자는 독어 또는 불어만 선택가능 함. · 국어교육과 외국어인학생은 2001.2학기부터 한국어 1과목만 부과
	협동과정(인지과학전공)	영어	· 제2외국어 시험과목은 위와 같음. 단, 자연계 전공자는 '98.1학기부터 면제
	국제대학원(국제협력, 통상협상, 지역연구, 한국학전공)	영어	· 독어, 불어, 중국어, 노어, 서반어, 일어, 한문 중 1과목.
	II. 정치학과, 외교학과, 사회학과, 경제학부,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경영학과, 농경제학과, 교육학과,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지리전공), 국민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소비자이동학과, 행정학과, 협동과정(여성학전공, 경영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영어	해 당 없 음
자연계	자연과학대학 소속 각 학과 및 협동과정, 공과대학 소속 각 학과(부) 및 협동과정,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 각 학과(농경제학과 제외) 및 협동과정,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약학과, 수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치의학과, 보건학과, 환경보건학과, 환경계획학과, 환경조경학과, 협동과정 (중앙생물학전공)	영어	해 당 없 음
예술계	미술대학 소속 각 학과 음악대학 소속 각 학과	없음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노어, 서반어, 일어, 한문 중 1과목. 단, 한문은 동양화과와 음악과의, 국악기악 및 국악이론전공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음.

※ 대학원입학고사에서 제2외국어를 응시하여 과목별 합격점수(석사과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박사과정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이상을 취득하여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함.

※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국어학전공)의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한문 선택 가능(2006.4차 대학원위원회)

※ 사회과학대학 :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제2외국어과목 미부과(2005년 제13차 대학원위원회(2005.12.15) 결정)

※ 사범대학 : 국어교육과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1과목만 부과(영어 면제)(2001년 12차 대학원위원회 결정)

※ 사범대학 : 교육학과,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지리전공), 국민윤리교육과, 협동과정(특수교육)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제2외국어 미부과(2002년 제7차 대학원위원회 결정)

※ 종합시험(전공)은 대학(원)별로 시행

(별표 2)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과목표

구 분	학 과(부)	외 국 어 시 험 과 목	
		필수	제 2 외 국 어
인 문 사회계	I. 인문대학 소속 각 학과 및 협동과정, 법학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역사)	영어	· 독어, 불어, 중국어, 노어, 서반어어, 일어, 한문 중 1과목. 다만, 한문은 국어국문학과외의 국문학전공(2006학년부터는 국어학전공자도 한문선택 가능), 중어중문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철학과의 동양철학전공, 종교학과, 미학과, 협동과정비교문학전공, 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의 역사전공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철학과의 서양철학전공자는 독어 또는 불어만 선택 가능 함.
	체육교육과	영어	독어, 불어중에서 1과목 선택
	협동과정(인지과학전공)	영어	제2외국어 시험과목은 위와 같음. 단, 자연계 전공자는 '03.2학기부터 면제
	II. 정치학과, 외교학과, 사회학과, 경제학부,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경영학과, 농경제학과, 교육학과,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지리전공), 국민윤리교육과,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행정학과,협동과정(음악학전공, 환경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여성학전공, 특수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영어	해 당 없 음
자연계	I. 자연과학대학 소속 각 학과 및 협동과정 약학과	영어	해 당 없 음
	II. 공과대학 소속 각 학과 및 협동과정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 각 학과(농경제 학과 제외) 및 협동과정,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수의학과, 간호학과, 의학과, 치의학과, 보건학과, 환경계획학과, 협동과정(조경학전공, 종양생물학전공)	영어	해 당 없 음
예술계	음악과	영어	해 당 없 음
	미술학과, 디자인학부	없음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노어, 서반어어, 일어, 한문 중 1 과목

- ※ 대학원입학고사에서 제2외국어를 응시하여 과목별 합격점수(석사과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박사과정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이상을 취득하여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함.
- ※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국어학전공)의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한문 선택 가능(2006.4차 대학원위원회)
- ※ 사회과학대학 :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제2외국어과목 미부과[2005년 제13차 대학원위원회(2005.12.15) 결정]
- ※ 자연과학대학 : 2005.1학기부터 제2외국어 미부과[2004년 제9차 대학원위원회 결정]
-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외국인학생에 한하여 2001.2학기부터 한국어 1과목만 부과하고 영어 및 제2외국어 제외[2001년 12차 대학원위원회 결정]
- ※ 약학대학 약학과 : 2002.2학기부터 제2외국어 미부과
- ※ 사범대학 : 교육학과,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지리전공), 국민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물리전공, 화학전공, 생물전공, 지구과학전공), 협동과정(특수교육)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제2외국어 미부과[2002년 7차 대학원위원회]
- ※ 종합시험(전공)은 대학(원)별로 시행

석사학위논문 심사

석사학위논문 심사

1) 논문제출자의 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
- 수료에 필요한 학점(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 포함)을 당해학기 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학생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에 규정된 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②항의 단서 및 부칙 제②항에 의거 각각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자
-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원)이 별도로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한 자

2) 논문제출 허용기간 : 과정수료 후 4년 이내 (단, 군복무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3) 논문심사 절차

가) 논문심사계획 공고

각 대학(원)별로 공고

나) 논문제출 예정자 등록

- 논문심사원 교부 : 각 해당 대학(원)
- 논문심사원 접수 : 각 해당 대학(원)

다) 심사용 논문 접수 및 논문심사료 징수 : 각 해당 대학(원)

- 심사용 논문 부수 : 3부
- 논문심사료 : 100,000원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정 은행에 납부.

라)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 각 학과(부)장은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 이상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함.
- 각 대학(원)의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선정하되,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심사위원의 자격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
- 1인의 심사위원에 심사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함.

마) 논문요지 발표

각 학과(부)장 책임 하에 요지발표회를 개최함.

바) 논문심사 및 구술고사 실시

- 논문심사 :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논문성적 : B 이상)이 있어야 합격임.
- 최종 논문 심사시에 구술고사를 실시하되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심사위원장은 심사요지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소속학과(부)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출함.

사) 보존용 논문제출

은박 하드카바 4×6배판 횡서 4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를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에 제출함.

※ 미제출자는 학위수여를 보류하고 제출학기에 학위를 수여함.

아) 원문 파일 제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On-Line제출” 이용.

박사학위논문 심사

1) 논문제출자의 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
- 교과학점 통산 60점 이상 취득한 학생 (당해 학기 중에 취득 예정학점 포함)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에 규정된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②항의 단서 및 부칙 제②항에 의거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경우
-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각 대학(원)의 별도 내규가 있는 경우 동 내규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학생

2) 논문제출 허용기한 :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6년 이내 (단, 군복무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3) 논문제출 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

가) 논문심사계획 공고

각 대학(원)별로 공고

나) 서식교부 : 각 해당 대학(원) 교무행정실

다)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

- 등록장소 : 각 해당 대학(원) 교무행정실
- 등록서류

- 논문심사 요구서 (소정양식)
- 지도교수 추천서 (소정양식)
- 이력서 (소정양식)
- 기타 필요한 서류
- 논문 심사료 : 등록시 300,000원 (달라질 수 있음)을 납부

4) 심사용 논문제출

가) 제출장소 : 각 해당 대학(원) 교무행정실

나) 심사용 논문

- 논문편수 : 1편. 단,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고논문, 부분, 역본, 모형, 표본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논문작성요령 :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초록 및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 (Key words)를 표기함.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외국어 초록 및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를 표기함.
- 제출부수
 - 심사용논문 5부 (인쇄하지 않아도 됨)
 - 논문초록 1부 (국문으로 작성)

5) 논문심사위원 추천

가) 심사위원의 자격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 ① 타교 교원 : 조교수 이상
 - ② 연구기관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 ③ 기타 : 위 ①, ②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추천방법

- 위 자격을 갖춘 자를 학과장이 대학(원)장에게 추천함. 이때 교외의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대학(원)장은 각 대학(원)의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분하여 추천함 (소정양식). 단, 논문지도교수 및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6) 논문요지발표 및 논문심사

가) 논문요지발표

각 학과(부)장 책임 하에 1회 실시

나) 논문 예비심사

각 심사위원장 책임 하에 3회 이상 실시

다) 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

소정양식의 보고서에 중심 희망일시를 기재하여 각 해당 대학(원) 교무행정실에 제출

라) 논문 중심 및 구술고사

- 장소 : 각 해당 대학(원) 지정장소
- 중심 통과 :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 구술고사합격 : 평균 70점 이상. 단, 심사위원 4/5 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함.

마) 논문심사 기간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음 (학위수여규정 제25조).

7) 보존용 논문제출(중심 통과분)

가) 제출 부수

금박 하드카바 4x6배판 4부 (1부는 심사위원 전원날인)를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에 제출

※ 미제출자는 학위수여를 보류하고 제출학기에 학위를 수여함.

나) 원문 파일 제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On-Line제출” 이용.

8) 준수사항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단,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함 (학위수여규정 제28조).

※ 공표방법 : 교육부 대원 81210-1291(2000.12.19)

-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 발표 등 기타의 방법(도서관을 통한 원문파일 제공 서비스)으로 공표

석 · 박사통합과정 운영

석 · 박사 통합과정은 박사학위를 최종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논문 작성이나 박사과정 입학 시험 준비 등으로 연구의 연속성이 저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수업연한은 4년이지만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수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이미 많은 외국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학문의 발

전이 빠른 분야에서는 연구 방향의 변천에 대한 신속한 적응이 요구되므로 꼭 필요한 제도이다.

주요내용

- 선발대상 및 시기 : 석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2개학기 이상 이수 후 선발
- 선발인원 : 박사과정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함.
- 이수학점 : 60학점
- 과정탈락자 및 중도 포기자 조치 : 석사학위 수여요건 충족시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여석은 박사과정생 모집시 충원
- 박사과정 인정 :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 선발대상 적용 :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대학원 연구생 제도

목적

석·박사과정 수료자가 소정의 부담금을 부담하고 대학원연구생 신분을 부여받아 각종 학교 시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우수한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시행시기

1996학년도부터

부담금

- 인문사회계(예체능계 포함) : 학기당 150,000원
- 자연계 : 학기당 200,000원

등록

- 등록기간 : 3월과 9월(연 2회 실시)(구체적 일정은 별도 공고함).
- '98학년도 제1학기부터 학위논문 제출 학기에는 연구생 등록을 의무화.

지원사항

- 시설이용 : 도서관, 자료실, 실험실, 대학원연구실 등
- 기타 : 차량출입 스티커 발급, 신분증 발급, 대학원연구생증명서 발급, 학생의료 공제 가입 자격부여, 서울대 경영자 배상 책임 보험 자동 가입 등